

# 수원시지역사회보장협의체 2018년 1차 연구기획분과 회의자료(1월)



○ 일 시 : 2018. 1. 16.(화) 10:30 ~12:00

○ 장 소 : 수원시휴먼서비스센터 중회의실

○ 주요내용

## 1. 인사 및 공유

- 1) 위원 인사 및 기관별 행사·정책 변동사항
- 2) 지방분권개헌 내용

## 2. 안건토의

- 1) 2017년도 연차별 시행계획 시행결과 평가
- 2) 2018년도 실무분과 민관협력 공동사업 계획

## 3. 차기회의 일정

# 1. 인사 및 공유

1) 위원 인사 및 기관별 행사. 정책 변동사항 공유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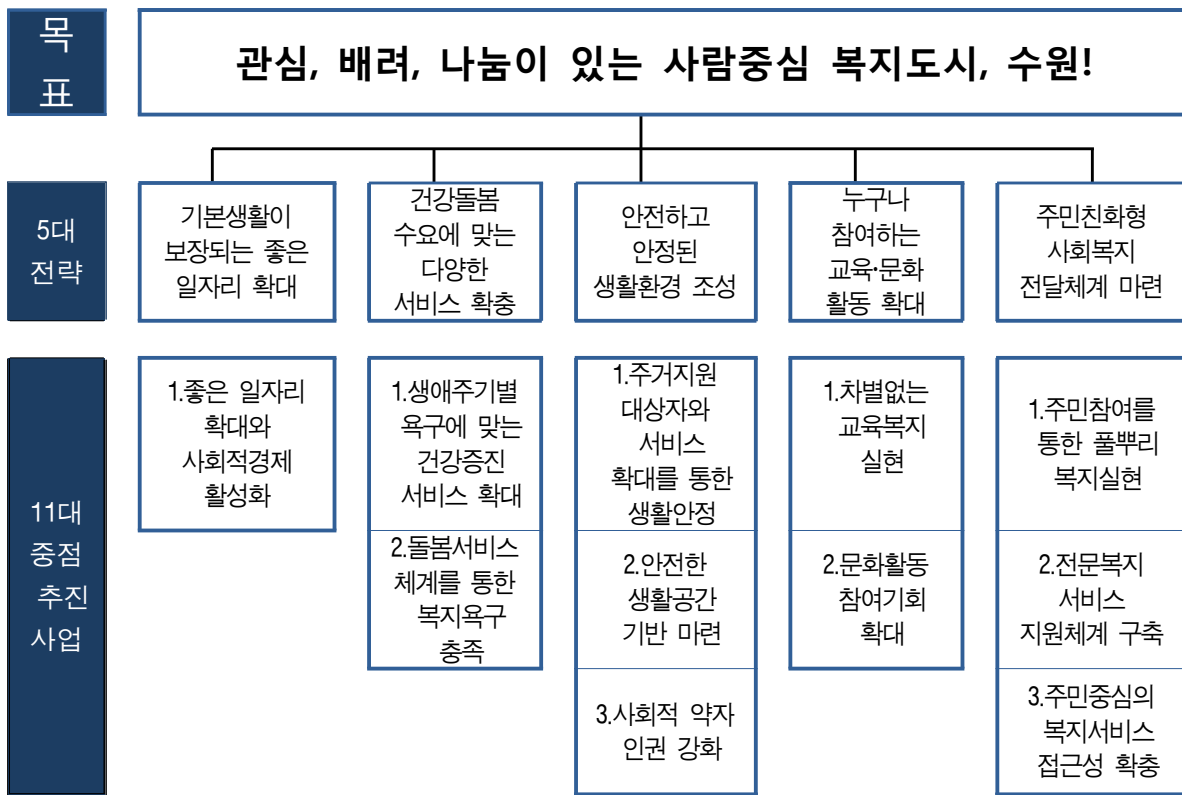
2) 지방분권개헌 내용

※ 별첨자료 참고

# 2. 안건토의

1) 2017년도 시행계획 시행결과 평가

○ 제3기 수원시지역사회보장계획 비전 체계



○ 관련 근거

- 사회복지급여법 제39조(지역사회보장계획 시행결과의 평가)
- 사회복지급여법 시행규칙 제3조(지역사회보장계획 시행결과의 평가)

○ 평가 개요

- 평가대상 : 제3기 수원시지역사회보장계획 2017년도 연차별 시행계획 시행결과

- 추진과제

〈단위 : 개/천원〉

구 분	총 계	지 역 사 업	보 편 사 업	비고
사업건수	74	55	20	· 지역사업 : 도·시비사업 · 보편사업 : 국비사업
사업예산	76,411,045	42,780,627	33,630,418	

- 평가주체 : 수원시·수원시지역사회보장협의체
- 평가기간 : 2018. 1 ~ 2월
- 평가절차

내 용	역 할	일 정
평가 기획	복지허브화추진단 협의체 사무국	2018. 1. 2.(화) ~ 3.(수)
사업 추진결과 작성, 취합	사업 소관부서	2018. 1. 4.(목) ~ 11.(목)
세부사업 평가 모니터링	협의체 12개 실무분과	2018. 1. 16.(월) ~ 25.(수)
평가 내용 정리, 발송	협의체 사무국	2018. 1. 29(월)
사업부서 의견 피드백	사업 소관부서	2018. 1. 30.(화) ~ 2. 5.(월)
평가 TFT 확인, 평가	평가 TFT	2018. 2. 6.(화) ~ 9.(금)
실무협의체 검토	실무협의체	2018. 2월 넷째주 예정
대표협의체 심의, 도 제출	대표협의체 복지허브화추진단	2018. 2월 말 예정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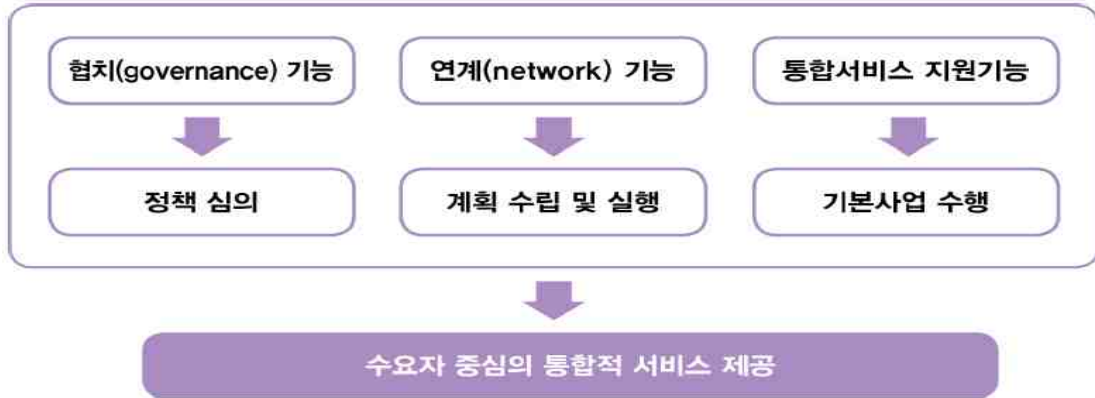
○ 세부사업(모니터링사업)

사업 번호	구분	사업명	세부사업명	담당부서	담당팀	담당자
6-1	지역	수원시민의 인권보호 및 증진	인권상담센터 운영	감사관	인권팀	정수진
6-2	지역	인권강화 교육	인권교육 강화	감사관	인권팀	차선화
8-7	보편	통합문화체육관광 이용권 사업	통합문화체육관광이용권 사업	문화예술과	문화정책팀	박은미
9-4	지역	수원시종합자원봉사 센터운영	시민 자원봉사 참여제고	자치행정과	주민지원팀	이선명
9-4		수원시종합자원봉사 센터운영	우수프로그램 공모사업	자치행정과	주민지원팀	이선명
10-6	지역	사회복지종사자 처우개선	보수교육, 상해보험비 지원	복지허브화 추진단	복지자원 관리팀	박선하

※ 세부실적 별첨

## 2) 2018년도 실무분과 활동 및 민관협력 공동사업 논의

### <지역사회보장협의체 주요기능>



[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기능]

주요 기능	내 용
협치(governance) 기능	• 지역사회보장계획의 수립·과정·평가 등 지역사회보장의 주요 사항에 대하여 민간과 공공이 협력하여 심의·자문
연계(network) 기능	• 사회복지와 관련된 서비스 제공하는 관계 기관·법인·단체·시설과 연계·협력 강화
통합서비스 기능	• 협의체 내 각 분과 간 통합 및 조정역할을 수행하고 지역주민의 욕구를 반영한 통합적 서비스 제공체계 지원 • 통합서비스 제공을 위해 기존의 보건복지 뿐만 아니라 고용·주거·교육·문화·환경 등 다양한 영역과 연계

### <연구기획분과 역할>

공통사항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◦ 실무협의체에서 검토하는 안건에 관한 사항</li> <li>◦ 지역사회보장 관련 서비스의 제공 및 연계·협력에 관한 사항</li> <li>◦ 실무협의체로부터 검토를 지시 받은 사항</li> <li>◦ 그 밖에 실무분과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</li> <li>◦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, 변경, 시행, 평가에 관한 사항</li> <li>◦ 사회복지지원 대상자에 대한 통합서비스 제공              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지역자원연계·협력 강화</li> <li>- 분야별 사회복지 정보 공유</li> <li>- 분야별 사회복지 욕구 파악 및 서비스 연계 지원</li> </ul> </li> <li>◦ 분야별 지역 현안사항 공동사업 추진 및 운영</li> </ul>
연구기획분과 주요역할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◦ 수원시 사회복지 정책 이슈 개발, 조사·연구</li> <li>◦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실무분과 활성화 지원</li> <li>◦ 주민참여 및 거버넌스 활성화 방안 지원</li> <li>◦ 지역사회보장계획 모니터링 지원</li> </ul>

## <참고자료>

### 수원시지역사회보장협의체 구성 및 운영 조례

제5조(실무분과의 구성 및 운영) ① 실무분과는 분야별로 공동분과장 2명 및 총무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.

② 시행규칙 제6조제5항에 따른 실무분과(이하 “실무분과”라 한다)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한다.

1. 실무협의체에서 검토하는 안건에 관한 사항
2. 지역사회보장 관련 서비스의 제공 및 연계·협력에 관한 사항
3. 실무협의체로부터 검토를 지시 받은 사항
4. 그 밖에 실무분과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

③ 실무분과의 위원은 실무협의체의 위원장이 지역사회보장 관련 분야 종사자 중에서 임명하거나 위촉하되, 사회보장, 보건 의료, 고용, 주거, 교육 담당 공무원은 당연직 위원이 된다.

④ 실무분과의 분과장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한 각각 1명의 공동분과장으로 구성하고 실무협의체 회의에 참여하며, 총무는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.

### 수원시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세칙

#### 제7조(실무분과)

① 실무분과 구성분야는 생애주기별 분야, 사회보장 전략별, 동인적안전망(동보장협의체 등), 기타 사회보장 관련 기관·법인·단체·시설 간 연계·협력 강화가 필요한 분야로 구성한다.

② 실무분과의 신설 폐지는 필요에 따라 실무협의체 검토를 통해 대표협의체에서 결정한다.

③ 실무분과 위원은 조례 제5조 제2항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구성한다.

1. 조례 제5조 제3항의 당연직 위원
2. 사회보장 관련 기관·법인·단체·시설 등 종사자
3. 학계 및 사회보장 관련 연구기관 등 전문가
4. 기타 공익 및 시민단체 관련 종사자
5. 지역사회보장 발전에 관심 있는 수원시민 등

④ 위원의 구성방법은 당연직 위원을 제외하고 공모 또는 추천을 통해 실무협의체에서 구성하며, 위원교육을 이수하여야 한다. 다만, 임기 내 위촉 시에는 실무분과 회의에서 분과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동의를 통해 구성할 수 있다.

⑤ 조례 제9조 위원의 위촉 해제 사유 외에 분과회의를 3회 연속 불참하거나 실무분과 운영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수 있다고 판단될 시 제4항의 절차에 의하여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.

⑥ 실무분과의 원활한 운영과 회의 진행을 위하여 사무국 직원을 간사로 선임한다.

## <2018년 민관협력 공동사업 추진 개요>

### ○ 목적

- 민관협력 및 네트워크를 통한 지역사회 문제 해결의 경험을 쌓고 지역사회 보장증진과 실무분과의 활성화를 도모함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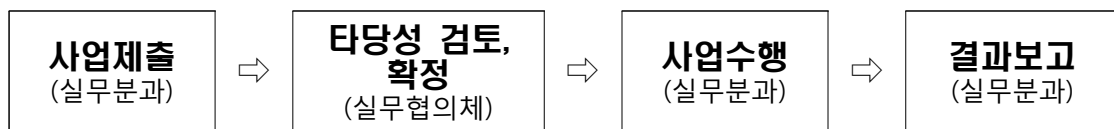
### ○ 2018년도 추진방향

- 제4기 지역사회보장계획 정책 제안을 위한 근거 및 토대 마련

### ○ 사업내용

- 제4기 수원시지역사회보장계획 정책 논의를 확산하기 위한 토론회 및 정책간담회, 시민의 참여를 유도하는 사업
- 지역의 현안 욕구 및 문제를 발굴·연구하여 정책 과제로 제안하는 사업
- 단일 기관에서 해결하기 어려운 지역적 욕구 및 업무 추진시 발생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지역사회 연합 사업

### ○ 추진절차



- 실무분과별 운영 방향 및 사업 논의 : 2018. 1월 중
- 실무분과 민·관협력 공동사업 계획 취합 : 2018. 2월 7.(수)
- 공동사업 검토, 확정(실무협의체 회의) : 2017. 2. 19.(월)
- 사업 추진 : 2018. 3월 ~ 9월 ※ 집중추진 요청기간 : 3월 ~ 6월 중
- 결과보고서 제출 : 2017. 10월 말까지

### ○ 추진방법

- 실무분과장의 책임하에 분과별 책임성과 자율성을 가지고 민관협력을 통해 추진

## <2018년 실무분과 활동 계획>

○ 정기회의 일자 : \_\_\_\_ 짜주 \_\_\_\_ 요일, \_\_\_\_\_ 시

○ 실무분과 활동 논의(주제, 내용, 방법 등)

--	--

### ○ 월별 활동

월	공동사업	지역사회보장계획	협의체 전체 행사	일정, 장소
1	*계획 확정, 제출	2017년도 시행계획 평가		
2	*분과 사업 확정			
3			전체 워크숍	
4		제4기 지역사회보장계획 세부사업 논의		
5		제4기 지역사회보장계획 세부사업 논의		
6		제4기 지역사회보장계획 세부사업 논의		
7		원탁토론 2018년도 시행계획 중간평가		
8		검토, 보완		
9		공고, 공청회, 심의 제4기 지역사회보장계획 제출		
10	*분과사업 종료, 결과보고서 제출	2019년도 시행계획 수립 검토		
11		2019년도 시행계획 수립 심의		
12			성과보고대회	

※ 협의체 전체 행사 : 지방선거 일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

**(실무분과명)**

**사업명 \_ 000**

**1. 추진배경 및 필요성**

- 
- 

**2. 사업목적**

- 
- 

**3. 사업목표**

- 
- 

**4. 사업개요**

- 사업기간 :
- 대 상 :
- 주요내용 (개요)

**5. 세부계획 (단위사업별 세부 계획)**

1) 세부사업 1 :

- 시행시기 :
- 참여인원 :
- 세부내용(활동) :
  - 
  -

- 추진방법 :
- 참여기관 및 역할분담

2) 세부사업 2



